

구리시 공고 제2024-1503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기관 공표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7조의3(위반사실의 공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(공표사항)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(공표 여부의 결정, 절차 및 방법 등)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4년 9월 9일

구 리 시 장



1. 공표내용

장기요양기관명	가은사랑요양원
급여종류	노인요양시설(개정법)
설치일(지정일)	2014. 5. 14.
소재지	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95(수택동, 해원빌딩 401호, 501호)
대표자(시설장)	곽노준(박태정)
위반행위내용	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7조제1항제4호 위반 (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)
행정처분내용	업무정지 104일(2024. 7. 1. ~ 2024. 10. 12.)

2. 공표기간 : 2024. 9. 9. ~ 2025. 3. 8.